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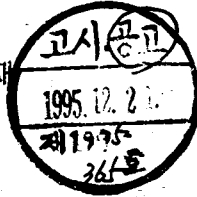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731-6367 / 전속 731-6369
 처리부서 : 도시시설과(시청본과 4층) 담당 하상문

문서번호 도설58710-1124

시행일자 1995.12.

(제 1안)

수신 내부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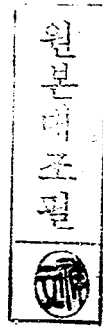
취급		시	장
보존	년		
국장	전결		
과장	이		
계장	2		
기안	하 상 문	법무담당관 심사필	
			협조

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1.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시관 58710-1109호('95.12.15), 시관 58700-1082호('95.12.6) 및 시관 58700-1083호('95.12.6)와 관련입니다.

2.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성산대교와 탄천2교(강남구 대치동 - 송파구 잠실동)의 보수공사로 인한 차량통행제한 요청이 있어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코자합니다.

첨부 통행제한공고(안) 및 도면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2안)

수신 공보1담당관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아래와 같이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 구분 : 공고

나. 게재 건명 : 통행제한공고

다. 게재 내용 : 별첨

라. 법적 근거 :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첨부 통행제한공고(안) 2부. 끝.

도로시설과장

041

3-1

44

(제 3 안)

수 신 수신처 참조

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1. 도설 58710-1099호('95.12.9), 도설 58710-1100호('95.12.9) 및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 시관 58710-1109호('95.12.15)와 관련입니다.

2. 성산대교와 탄천2교(강남구 대치동 - 송파구 잠실동)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제한코자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별첨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단속부서(마포, 영등포구,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본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단속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마포, 영등포구에서는 현재 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성산대교 진입부에 대하여 기능직 확보·초소 설치 부지등 초소 운영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한 초소를 설치·운영토록하시고, 불가할 경우에는 기동단속반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단속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단속하는 탄천2교에는 높이 2.5m 초과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하여 단속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보수공사 시행부서인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해당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량 진입로상에 안내·규제 표지판을 조속 설치(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통행제한 공고(안) 및 도면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서구1-25(건설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장(시설관리부장), 동부, 남부건설사업소장, 운수1과장.

(제 4 안)

수 신 서울지방경찰청장

참 조 교통관리과장

제 목 차량통행제한 공고

042

3-2

42

1. 도설 58710-1099호('95.12.9), 도설 58710-1100호('95.12.9) 및 도시시설
안전관리본부 시관 58710-1109호('95.12.15)와 관련입니다.

2. 성산대교와 탄천2교(강남구 대치동 - 송파구 잠실동)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차량통행제한코자 도로법 제5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벌칙 공고(안)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교량 진입로상의 규제
표지판을 조속 설치(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통행제한 공고(안) 및 도면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043

3-3

45

서울특별시공고 제 1995 - 호

심사	1995.12.27	316 호
담당자	법제처	보수담당관
	이/선경	문

통행제한공고

도로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제한하고자
같은법 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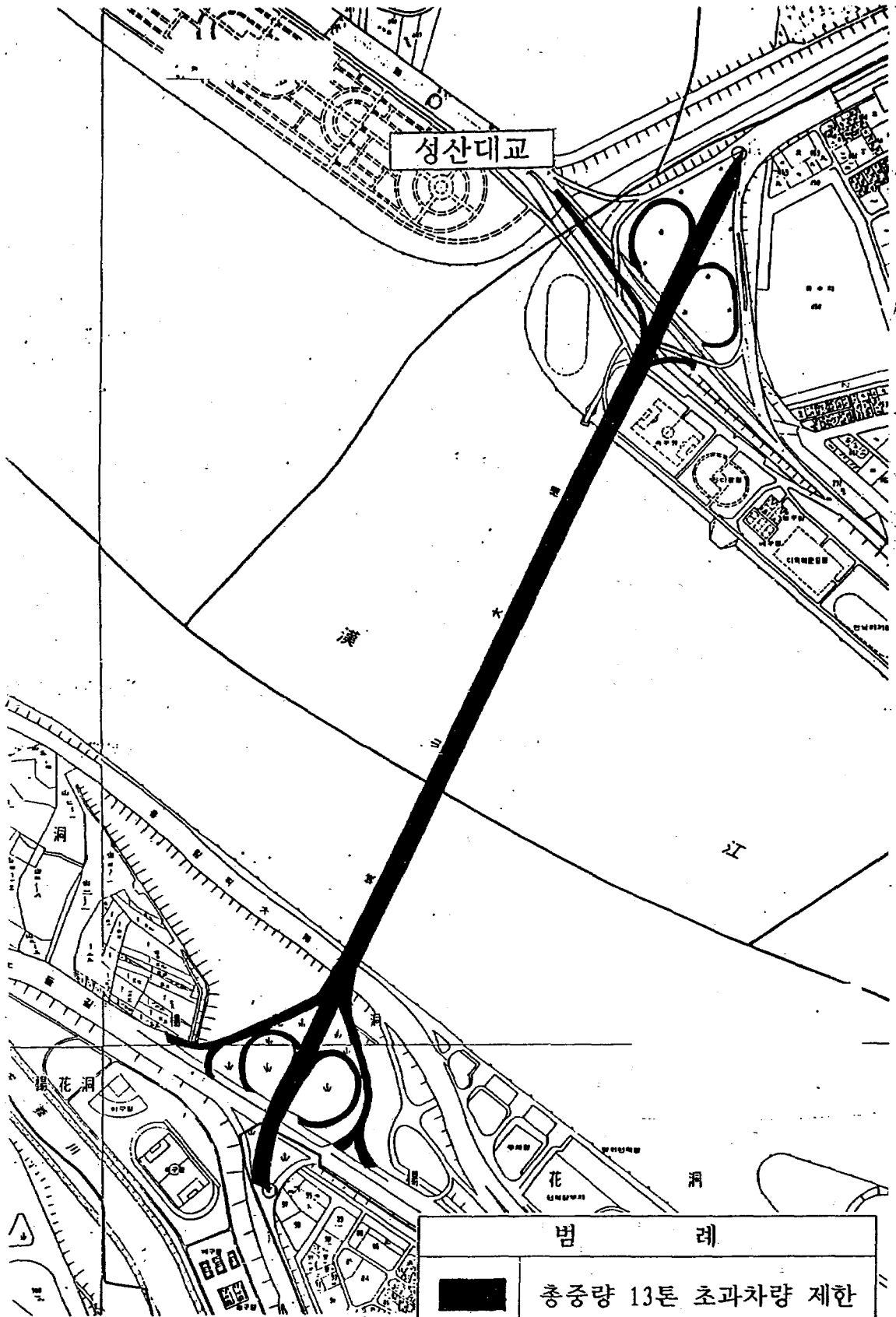
1995 년 12 월 일

서울특별시장

도로의 종류	국도 서울특별시도	시 설 명	성산대교 탄천2교
제한의 대상	· 성산대교 : 총중량 13톤 초과 차량 · 탄천2교 : 총중량 6톤 초과 차량 및 높이 2.5m 초과 차량	구 간	· 성산대교 : 교량 본선 전 구간 및 진출입램프 · 탄천2교 : 교량 전구간
기 간	1995년 12월 27일부터 보수공사 완료시까지		
이 유	동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 방지		
기 타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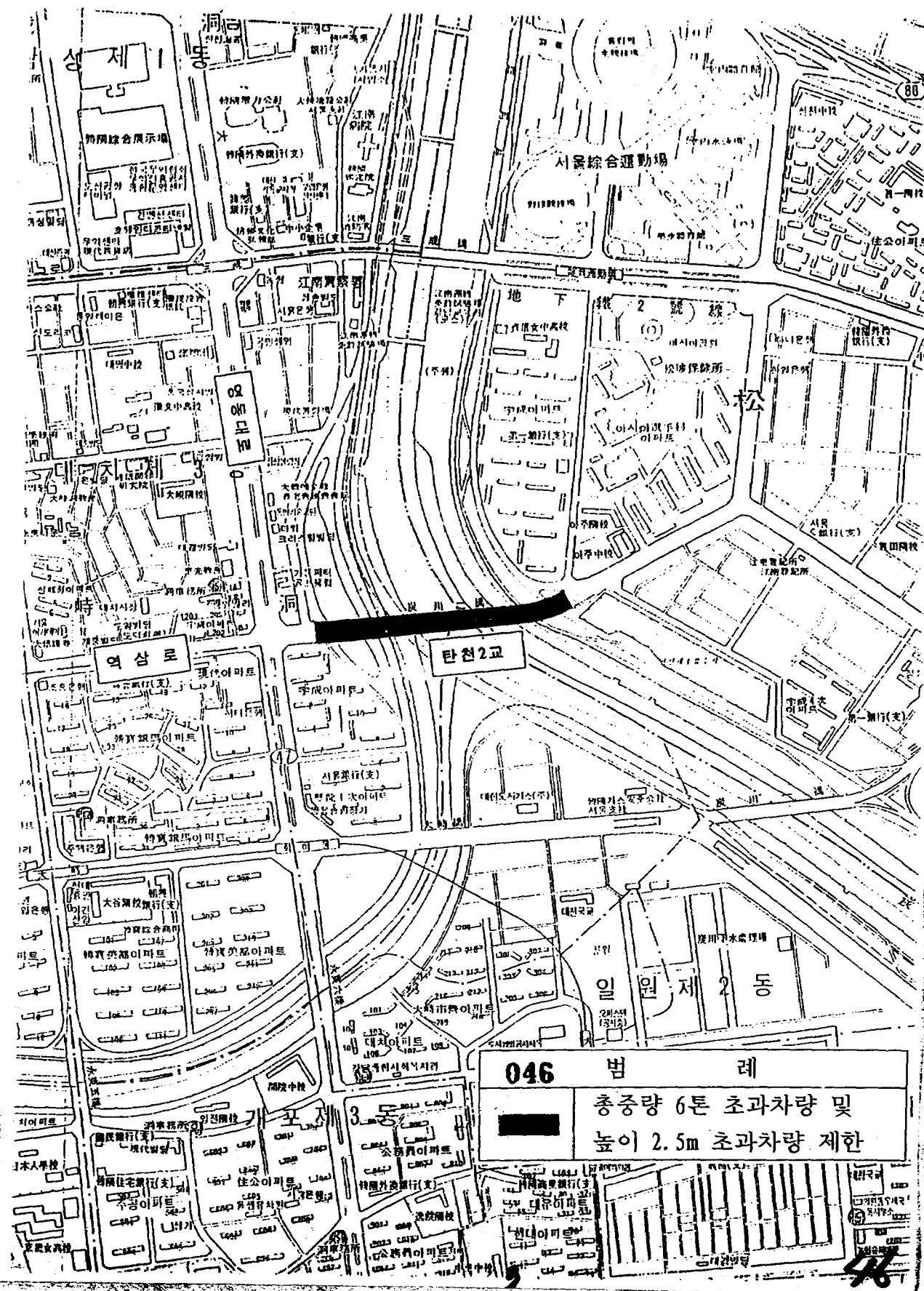
생략(도로국 도로시설과,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부 및 관할구
건설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045

2

44



046 범 레

총중량 6톤 초과차량 및
높이 2.5m 초과차량 제한